

인권정보자료실
NSL1.102

1544
1966

국정파탄 및 4대 악법 저지

국민대토론회

국정파탄 및 4대 악법 저지 국민대토론회

일시 : 2004. 11.11 (목) 10: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인권정보자료실
NSL1.102



한나라당 민생정책본부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 본청 124호
Tel. 02)788-2240, 2272 Fax. 02)788-2787
E-mail. policy@hannara.or.kr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국정파탄 및 4대 악법 저지
국민대토론회

정책위원회

진 행(안)

■ 개 회

■ 대표최고위원 인사말씀

■ 모두 발제 (국정파탄 · 헌법무시 정권 관련) - 공성진의원(제1정조위원장)

■ 주제발표 (국보법 관련) - 김상철 변호사

■ 주제발표 (사학법 관련) - 임광규 변호사

■ 주제발표 (언론관계법 관련) - 정병국 의원

■ 주제발표 (과거사관련법 관련) - 유기준 의원

■ 이벤트 (종이비행기 날리기)

■ 폐 회

목 차

■盧대통령과 열린우리당, 4대 국민분열법으로 무엇을 노리나?	
- 정책위원회	7
■모두발제(국정파탄·헌법무시·정권관련)	
- 공성진의원	21
■주제발표(국가보안법관련)	
- 김상철변호사	27
■주제발표(사립학교법관련)	
- 임광규변호사	39
■주제발표(언론관계법관련)	
- 정병국의원	49
■주제발표(과거사관련법관련)	
- 유기준의원	55
■4대 악법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 국가보안법 폐지되면 이렇게 된다	67
♣ 사립학교법 통과되면 이렇게 된다	71
♣ 언론관계법 통과되면 이렇게 된다	74
♣ 과거사관련법 통과되면 이렇게 된다	78

**盧대통령과 열린우리당,
4대 국민분열법으로 무엇을 노리나?**

盧大統領과 열린우리당,
4대 국민분열법으로 무엇을 노리나?
(정치학적 분석)

한나라당 政策委員會
2004. 11. 11

I. 문제의 제기

새로운 국회,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17대 국회가 파행 11일째를 맞고 있다. 파행이유도 여야간 대립이 아닌 행정부 공무원인 국무총리의 제1야당 모독이라는 현 정사상 초유의 일로 전례가 없던 일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파행 책임소재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賊反荷杖식으로 야당의 좌파공세 사과를 요구하는 등 전형적인 생떼 쓰기, 물타기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 과거 그 어떤 정당 보다도 민주화와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며 새로운 정치세력을 표방하고 있는 여당의 구태적 사과와 언행에 놀라울 따름이다.

그 뿐인가?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면서 한편으로는 4대 국민분열법의 강행처리를 천명하고 있다. 마치 4대 국민분열법의 통과만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총리의 막말발언은 야당의 반발과 국회파행을 가져오기 위한 고도의 정략적 발언이다. 한편으로는 국회를 파행으로 몰면서 한편으로는 4대 국민분열법의 강행처리를 위한 전의를 다지고 있다. 여권의 입장에서 예산심의나 이라크파병안, 민생법안 처리의 절박성을 느낄 수 없다. 국회정상화를 위한 성의 있는 그 어떤 노력도 찾기 어렵다. 여론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다분히 관성적 행태를 보일뿐이다.李총리의 막말발언은 불리한 정치 정세를 국회파행을 통해 양비론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정략적 술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계속된 국회파행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심화시키고 그 속에서 4대 국민분열법의 강행처리 기회와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계산도 했음직하다. 이처럼 야당을 무시한 정권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진심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여론의 지지도 불리한 국가보안법 폐지, 언론의 비판과 관련 단체의 조직적인 반발이 예상되는 4대 국민분열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단순히 정치적 신념에 의해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 盧정권은 정치공학적 득실계산에서 가장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이다. 2002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이미지 조작과 허위사실 유포, 적과 동지 심지어 서울과 지방

까지 갈라 세우며 자파세력을 결집시키고 상대방의 이미지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언들이다. 국정 책임자나 세력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은 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10. 27 TNS 여론조사결과】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	합계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보완	35.9%	58.6%	5.5%	100.0%
해방이후 공권력에 의한 인권 탄압을 조사하는 과거사규명법	47.9%	46.4%	5.7%	100.0%
신문시장 점유율에 따라 제한을 가하는 언론관계법	38.2%	52.0%	9.8%	100.0%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에 이사추천권을 주는 사립학교법	44.5%	44.9%	10.6%	100.0%

각종 여론조사에 보듯이 열린우리당의 4대 국민분열법에 대한 국민여론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결사저지를 천명하고 있다. 날치기가 이루어지면 심각한 분열과 함께 국회파행과 상생의 정치는 실종될 것이다. 국론분열은 더욱 심화되고 야당은 거리로 나가지 않을 수 없으며 정국불안은 민생경제를 더욱 파괴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여권은 4대 국민분열법에 목을 매고 있다.

II. 열린우리당의 4대 국민분열법,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4대 국민분열법이 갖고 있는 정책적 오류와 문제점을 살펴보자. “4대 국민분열법은 한마디로 ‘反자유 反시장’ 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자유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정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로 규정할 수 있다.

1. 국보법 폐지는 심각한 안보위협 초래는 물론 헌법정신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열우당은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은 형법' 개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념혼란의 초래와 치명적 안보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형법보완'론은 검찰총장조차 우려를 표명했듯이 법 적용상의 심각한 허점들을 안고 있다. 결과적으로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북한을 넘나들며 친북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용인되고 주체사상을 선전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해 있다. 헌법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확립에 있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 장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내재된 정신이다. 국가보안법의 이론적 기초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체제방어 장치인 국가보안법을 동등한 수준의 대안마련 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헌법정신을 침해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

2. 여권의 과거사 규명방식은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진상규명작업에 정파성이 개입되어 정치적 악용 소지가 크다

열우당은 과거사 진상규명 취지는 전국 전후부터 권위주의적 통치시대에 이르기까지 반민족, 반민주, 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화해와 통합을 이루하고 역사와 국가발전을 기약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열우당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를 모방하여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국가기구를 구성하여 △1945년 광복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8년 건국 이후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사활동을 벌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이 추진하는 과거사 진상규명은 근복적으로 자학적 역사관에 입각하여 우리의 근현대사를 가해자 중심의 역사로 편파하고, 규명대상을 임의적으로 선별할 가능성성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문혀진 진실을 새롭게 되살리는데 있어 '인권'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도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누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했고 이를 훼손하였는지 그 功過에 대해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역사의 부정적 유산들은 청산하고 긍정적 유산들은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 특정정파의 입장에서 근현대사의 부정적 사건이나 결과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진실과 화해가 아니라 자학과 정치보복일 뿐이다. 새로운 분열과 대립을 낳고 결국은 국력의 소진과, 미래 세대에게 우리역사가 부끄럽고 잘못된 역사라는 부정적 인식만을 심어줄 뿐이다.

따라서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의 해원상생(解冤相生)을 이루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단절과 처벌이 아닌 화해와 계승이라는 국민적 합의 아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 학계가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완전 독립하여 자율적·중립적으로 광범위

한 분야에 걸쳐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명된 사람들과 기구로 과거사규명을 시도한다면 권력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역사 를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한국 현대사에 대한 재조명과 공정한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불과 30여년 전의 역사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미래로 나갈 수 있으며 공동체 공통의 목표와 가치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러나 현대사의 재조명(진상규명)은 역사발전의 과정이 되어야지 역사 단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3.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현장을 ‘이념투쟁의 장’ 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크다

열우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1/3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하며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1/3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고 사학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법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사학재단의 학교운영 자율성을 크게 침해 제약하고 있어 위헌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하는 방안은 재산출연으로 형성된 사학법인의 경영권과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이사장 친인척은 무조건 학교장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 교사 등이 추천한 일부 이사는 권한만 갖고 법적·재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것 또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다.

여권의 개정안은 순수해야 할 ‘교육현장을 권한 다툼이 난무하는 ‘이전투구의 무대’, 특정 정치이념을 선전하고 유포하기 위한 ‘정치투쟁의 공간’으로 전락 시킬 우려가 있다. 자율기구인 학부모회, 학생회, 직원회 등을 법정기구로 만들 경우 이것은 또 다른 권리기구나 이권기구로 변질되어 학교 현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툼이 커질 것은 不可避可知이다. 교사회가 인사나 징계위원을 추천하면 학교경영이 사실상 교사 주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이들이 본연의 임무를 팽개친 채 학교운영권에만 매달린다면 학교의 본질적 사명이나 사학의 창학이념, 차별성은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이다. 특히 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만 하는 ‘사무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4. 언론관계법은 위헌적 규제를 통한 ‘비판언론 옥죄기’이다

열우당은 언론의 기능보장, 독자 권리보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시킴으로써 공정한 여론형성과 언론의 공적 책임을 실현한다는 명분 아래 5공 시절의 언론기본법을 연상시킬 정도로 신문사의 경영과 제작 전반, 그리고 개별 기자와 기사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1개사 30%, 3개사 60%라는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은 위헌적 조치이며 국민의 ‘구독권 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이 상위1개사 30%, 상위3개사 75%이상’일 경우에만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는데 언론자유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신문에 대한 규제는 기업보다 더 신중해야 함에도 이를 더 규제하려는 것은 反시장 정책이며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독자의 구독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되는데 신문시장의 점유율 제한으로 인해 이러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놓후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신문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나라들도 신문사간 인수·합병으로 인한 점유율 상한선을 넘긴 경우에만 제약을 가할 뿐이지 현 정권처럼 일방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기존의 개별 언론의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주요국가 신문시장 독과점 현황과 시장점유율 제한】

국가	내용	시장점유율 제한 여부
미국	지역별 독점, 신문 2개이상 발행되는 도시는 6개에 불과	없음
일본	아사히 등 3大紙가 전국지 시장의 76.8%를 차지 (2003년 기준)	없음
영국	상위 3대 신문그룹의 시장점유율 70.8%, 1위 뉴스코퍼레이션 그룹의 점유율 32.3%(2003년 10월 기준)	신문과 방송 등의 교차소유를 금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
프랑스	소크프레스 언론그룹의 신문 시장 점유율 32%까지 오르기도	인수·합병에 의한 전국 일간지 발행 부수의 30% 초과금지
독일	악셀 슈프링어 그룹이 신문 가판 시장의 80%, 전체시장 23% 점유	인수·합병에 의해 시장점유율 20% 초과시 연방독점방지청에 신고
노르웨이	3대 신문그룹의 시장점유율은 63.5%	인수·합병에 의해 시장점유율 20% 초과시 개입(실제 가이드라인 33%)

언론사내 논의 구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긴급조치시대에도 없던 것이다. 신문사 편집위원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 대표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설치하지 아니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것은 언론사 운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며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편집위원회가 제정하는 편집규약에 담아야 할 사항으로 ‘편집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사업인 신문사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하고 취재·제작 거부권에 대한 사항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편집위원회가 사실상 언론노조에 대한 내부 감시기구 역할을 하고 경영진과 편집진, 데스크와 일선취재팀의 대립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편집규약 제정현황】

국 가	법제화 여부	내 용
미국	×	편집권 개념 정의조차 뚜렷하지 아니함
영국	×	노사 자율적 제정 권고
독일	×	▪ 자율적 편집규약 제정 ▪ 법적 강제는 위헌
프랑스	×	노사자율
일본	×	노사자율
오스트리아	△	▪ 법에 편집권 관련규정을 두었으나 권장 규정 ▪ 경영진이 거부할 수 있으며 일부 신문사만 편집 규약을 제정
노르웨이	×	신문발행인협회와 기자협회가 자율적을 제정

‘독자권익위원회’와 ‘고충처리인’ 의무화도 신문제작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가능케 하는 독소조항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문의 기사내용과 논조에 대한 비판과 판단은 독자의 몫이며 마음에 안 들면 구독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다. 여권의 법안은 친여시민단체를 동원하여 비판적 신문에 대한 압력을 가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언론피해 구제제도 또한 자율성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 새로 도입된 ‘언론피해 상담소’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담소가 정부의 의도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상 정부기구의 확대나 다름없으며 상담소의 남발과 언론사 상대의 소송남발, 특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조직적인 소송의 제기는 특정언론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언론보도에 대한 직접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까지 보도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최대 2/5에 가까운 수의 중재위원을 시민단체인사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의 정략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광고를 규제한다니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신문 광고량의 적적성 여부는 독자와 시장의 몫이다. 광고비율 제한은 편집권을 침해하는 사전적 규제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1998. 2. 27 결정(96헌바2)을 통해 ‘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각국의 신문광고비율 제한여부】

국가	법 규정여부	내용
미국	×	광고가 없는 정기간행물에 한해 우편요금 할인혜택
영국	×	40여년 전에 일각에서 입법론을 제기했으나 무산됨
독일	×	일체의 규제 없음
네덜란드	×	방송광고 분량에 대해 규제만 존재
이탈리아	×	상동
일본	△	광고분량이 일정비율 초과시, 우편료 할인혜택 제외
노르웨이	△	정부지원 수혜, 광고가 전체지면의 50% 초과 불가
프랑스	△	광고비율이 일정기준 초과시, 정부 지원대상 제외

III. 열린우리당의 4대 국민분열법, 입법강행 의도는 무엇인가?

국민적 합의 부재와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강행처리 입장장을 밝히는 여권의 태도를 보면서 4대 국민분열법안의 정치적 노림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한 기싸움이나盧대통령과 이해찬 총리의 아집과 독선적 사고의 발로일까? 아니면 신념일까? 그 어떤 정권보다도 정치적 실익계산에 밝은 현 집권세력이 민심을 잃어가면서까지 무리수를 둘 리가 없다는 점에서 4대 국민분열법안의 정치적 노림수는 따로 있다.

1. 먼저 강경노선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내부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가 국면전환카드의 절실성이다. 17대 총선 직후 열우당 정동영 의장은 여야 대표회담을 제의하고 ‘相生의 政治협약’까지 맺는 등 새로운 정치를 표방했지만 얼마 안 되어 ‘相剋의 政治’가 불가피한 과거사규명 등 국민여론과 동떨어지고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는 4대 국민분열법을 들고 나온 것은 그 만큼 국면전환의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탄핵역풍 덕분에 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열우당이 선거 자축에 앞서 직면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소수정권이 아니라라는 점이었을 것이다. 행정부와 의회권력을 장악한盧정권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야당의 발목잡기 탓으로 먹고살기가 어렵게 되었고 이제는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비전과 안정감을 제시해야 했다. 그 과제가 바로 민생경제였다.

그러나 정치적 투쟁에만 능숙한 여권이 폐폐해진 민생 경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없었으므로 국민의 높은 기대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시간도 벌어야만 하는 국면전환카드가 절실했을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과거사규명 등이 자신의 무능을 은폐하며 야당(대표)도 죽이고 자신들의 정통성과 개혁 이미지도 부각시킬 수 있는 1석3조의 절묘한 국면전화카드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권은 정치적 술수를 파악할 수 있는 높은 民度와 인위적인 국면전환카드로 민생경제의 심각성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에는 민생경제실정이 너무나 심각했던 사실을 간과했다.

둘째, 2005년 당권장악을 위한 충성과 선명성 경쟁이다. 이부영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수차례 4대 국민분열법안의 입법 강행처리 의사를 밝히며 강성경쟁을 하고 있다. 지도부로서 정권 차원의 전략에 대한 책임감 때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장래라는 개인적 요인 또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이 될 것이다. 정권적 차원에서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4대 국민분열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의 책임론을 면하기 어렵고, 4대 국민분열법을 무난하게 관철시킨다면 2005년 전당대회 당권경쟁에서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계산을 깔고 있을 것이다. 여권지도부는 상대방(정적)에 대한 강력한 공격과 선명성의 부각을 통해 내부 구성원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정통적 구태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현재 열우당에서 가장 강경하며 결집력을 자랑하는 세력은 親盧직계들이며 어떤 발언과 자세가 지지를 받는지는 이해찬 총리의 막말 발언을 통해 확실하게 증명된 바 있다.

2. 4대 국민분열법을 통한 정권적 차원의 노림수는 사회 주류세력 교체 또는 무력화를 통한 2007년 유리한 대선 환경 조성작업이다.

4대 국민분열법 강행처리를 통한 정권차원의 노림수는 한마디로 2007년 대선을 위한 유리한 환경의 사전조성이며 보수주류세력의 교체와 무력화는 필수 선결요건이다. 대선전략의 핵심축인 수도이전이 현재판결로 심대한 타격을 입으면서 4대 국민분열법처리에 대한 여권의 절박성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4대 국민분열법은 2007년 대선에서盧정권에게 어떤 정치적 실익을 가져다 주는가?

첫째, 국가보안법 폐지는 남북정상회담을 촉진시킬것이며 2007년 대선에서 가장 강력하며 조직적인 선거전위대를 탄생시킬 것이다. 국보법 폐지의 1차 목적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자전 조직적 성격이 강하다. 제2기 부시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한반도 긴장고조 가능성 등 정세가 불확실하고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강행하는 이유는 국면전환을 위한 유력한 카드인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시켜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에 경제적 보상 외에도 북에서 주장하는 민족공조를 상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여권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권이 주장하는 냉전시대 인권침해 운운은 이미 90년 이후 법원에서 그 적용을 엄격히 하고 국보법 때문에 인권침해 사례를 불러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전혀 없다. 현재 간첩이나 친북 주사파 또는 대한민국의 체제전복을 피하지 않는 한 국보법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국보법의 폐지는 이미 여러 학자나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친북세력(주사파)의 활동을 합법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과 세력을 더욱 확대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조차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친북주사파의 활동 강화와 외연 확대는 인터넷과 구전을 통해 광범위한 안보해이와 자학적 역사관, 반자유 반시장 노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등 계급투쟁적 대립구도를 조장, 우리사회를 부정해 나갈 것이다. 빈곤과 빈부격차는 무능한 좌파정권 탓이 아니라 가진 자의 착취 때문이라는 오도되고 시대착오적인 가치관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친북 주사파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세력과 활동 강화를 위해 노무현정권과 직간접적인 연계가 있던 없던 간에 전략적으로 노무현정권의 재집권을 위한 충성스러운 선봉대이자 전위대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의 입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한나라당의 집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노무현정권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얻으려 하는 것은 바로 이점이 아닐까? 결론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을 뚫고 친북세력을 확장시키는 대신盧정권으로서는 '노사모' 이상 가는 가장 열성적인 전위 선거운동세력을 확보하게 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립학교법 개정은 전교조의 학교장악을 지원하고, 친정권적 유권자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사학운영에 비리나 불투명성 등 문제가 있으면 현행법에 의해서 또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 사립학교재단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와 감시 그리고 처벌을 할 수 있다. 관선이사의 파견 등 기존 재단을 완전 교체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개방형이사제도를 고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제화되고 여기에서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권력 투쟁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은 단연 조직력과 투쟁성에 독보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교조이다. 의식화된 일부 학부모 모임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전교조가 학교 재단 이사로 참여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장악한다면 사학의 독자적인 전학이념과 자율성은 무너지고 특정집단의 특정이념에 의한 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라크 파병반대, 반미교육 등에서 보듯이 전교조는 이미 순수한 교원들의 이익 집단이라기보다는 반미자주화 성향의 정치집단화 되어 있다. 이들이 단순히 학생의식화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학교운영 및 재단의 인사권까지 장악하는 길을 열어 준다면 학교현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학교현장의 주류세력 교체를 위한 대대적인 한국판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학교현장에서 친정권적인 정치교육이나 기존 역사와 질서를 부정하는 정치 교육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면 현재 고등학생들이 2007년 대선에서 유권자임을 감안한다면 사립학교법 개정은盧정권에게 엄청난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학재단의 반발 심지어 종교재단의 반발까지도 무시하며 사학법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그들의 반발에 비해 얻는 정치적 이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 아닐까?

셋째, 언론관계법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비판언론 죽이기와 친여언론 키우기이며, 2007년 대선을 겨냥한 정권의 무능과 실정의 은폐 그리고 이미지 조작을 용이하게 하려는 사전 조치적 성격이 강하다. 현 정권이 죽이려는 언론이 누구인지는 이미 현직 국무총리의 입을 통해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여권은 언론 관계법 개정은 전언론의 완전통제와 어용화를 도모하고 있다. 낮은 국정지지도와 민생경제에 대한 대안이 없는 정권의 무능을 은폐하기에도 이미 방송과 유력 인터넷매체 그리고 다수의 친여매체를 확보했음에도 조금의 비판적 목소리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권력의 의도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방송에 지금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여권의 반민주 반개혁적 언론관은 반시장, 반자유적 사고이전에 좌파적이고 파쇼적 발상이다. 전통적인 사회독재주의 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까지 하려는 정권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2007년 대선을 위한 언론의 완전통제, 이를 통한 무능과 실정의 은폐 그리고 이미지의 조작, 이것이 언론관계법을 통해 노리는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넷째, 과거사와 친일규명법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역사의 부정과 유력 야당 주자 죽이기에 있다.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청산하자는 당위적 명분에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역사의 청산은 새로운 역사를 위한 통합의 기반을 만드는데 있으며 교훈을 남기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은 단절이 아닌 계승이 되어야 한다. 연좌제를 적용하여 조상의 죄를 들쳐 내어 부관참시 하여 얻는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실익이 무엇인가?

과거사규명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는盧대통령의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에서 여권이 주장하는 과거사규명의 목표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과거사 규명이 국정현안에 대한 돌파구가 없고 야당 대표의 국민적 인기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모두 다 부정적 관점에서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여권이 과거사규명을 통해 노리는 바는 무엇이며 기구의 성격과 구성원의 면면에 있어 정치성을 배제하자는 국민여론과 야당의 주장을 무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짐작이 될 것이다.

IV. 맷음말

결론적으로 여권의 4대 국민분열법안은 치밀하고 정략적인 의도에 준비되고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4대 국민분열법안이 날치기로 강행처리 된다면 현 정권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많은 국민들과 세력들이 무력화되거나 무장해제 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국민들의 실망은 물론 기가 꺾일 것이다. ①친여세력의 확대강화와 반대세력의 무력화 ⇒ ②1단계 주류세력의 교체 ⇒ ③2007년 대선 재집권 ⇒ ④주류세력의 완전교체, 이것이 4대 국민분열법을 통해盧정권이 노리는 궁극적 목표가 아닐까? 분명한 것은 4대 국민분열법이 여권의 뜻대로 강행처리 된다면 여권은 이런 수순을 밟아갈 것이다.

盧정권은 지금 공개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그 동안의 발언들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역사를 시민혁명의 연장선상 속에서 주류세력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007년 재집권을 최대의 과제이자 목표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생경제의 실패에 따른 낮은 국정지지도를 탈피할 현실적 대안이 없고, 수도이전의 무산에 따른 충청-호남 지역 연합구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2007년 대선을 생각한다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처리해야 할 긴급한 사안이 바로 4대 국민분열법안일 것이다. 어쩌면 민생도 경제도 관심이 없을 것이다. 국회도 시간이 지날수록 양비론으로 가서 손해 볼일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문제는 권력의 계속적 유지가 관심이다. 국정은 아무리 잘못해도 선거에만 이기면 된다. 卢정권은 그 경험을 2002년 대선에서 이미 보여줬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며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 막무가내식 권리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국민의 지지밖에 없으며 굳건한 의지가 야당의 생명 줄이기도 하다.

모두 발제

공 성 진(국회의원/제1정조위원장)

국정파탄 · 헌법무시 정권 관련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시는 우국 시민 여러분! 저는 강남 을 출신 공성진 의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국정파탄을 저지하고, 4대악법을 저지하기 위하여, 그 대책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0월 12일 Berlin 발언, 10월 28일 국회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서, 나라의 총리라는 사람이 국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언론을 탄압하고자 하는 망언을 거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이해찬 총리의 파면을 대통령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의 강력한 「저항의지」를, 연일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폭거를 저질렀던 이해찬 총리는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해찬 도발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국정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현 정권의 실정들 때문에, 민생파탄, 교육파탄, 방위파탄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런 실정들과, 수도이전 무산에 따른 책임을 호도하고 다른 데로 돌리고자 하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현 정권의 지지 세력을 다시 규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듭되는 실정과 민생파탄으로, 지지도는 바닥을 기고 있고, 자기들의 지지 세력들도 많이 이반됐습니다. 그래서, 탄핵 때처럼 편가르기와 대립투쟁 국면을 만들어서, 자기들 세력을 다시 결집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 국민을 무조건 기득권 수구세력이니, 꼴통보수니 하며 매도하고, 선악 이분법으로 대립과 긴장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렇게 재결집한 친위세력들로, 다수의 국민들을 제압하고, 4대 악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림수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수십년」 장기집권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4대 악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가장 크고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끝으로, 이 과정에서, 이해찬 총리의 개인적인 야욕도 상당 부분 가세되었던 것입니다. 즉, 노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는 대리전을 치룸으로써, 핵심 지지 세력의 신망을 좀더 확실하게 얻어서, 차기 대권 경쟁에서 독보적인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야심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 4대 법안이란 것이 정말 개혁법안인지, 퇴보하고 역행하는 악법안인지 한번 생각해보기로 합시다.

국보법 폐지는, 현 정권에 비판적인 우리 사회의 애국·안보세력을 무력화하고, 현 정권의 지지기반인, 자기들을 포함한 친북세력의 활동공간을 크게 넓히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례 추가))

언론관계법은, 동아·조선 등 자기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에는 압박을 가하고, 자기들을 편드는 언론에게는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언론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이런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정치행위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는 소행에,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들은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신문 판매유통 상의 일부 문제들을 빌미로, 주권자 국민들의 기본권인 언론자유를 대폭 박탈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현 정권 사람들은 국민들을 우습게보고, 국민들이 경중도 가리지 못하고, 내거는 거짓말과 그 실상을 가려서 판단할 능력도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는 말씀에서 옛날을 떠나
이루 편하 진로한 는데는 교육이 필요
'에게 관심을 둘까'

34 대법원 49
53년 3월
제7차 행정부 노동부에 가기

사학법 개정안은, 전교조가 학교의 주도권을 장악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편향된 정치사회이념과 왜곡된 역사관을 차세대 교육에 개입시키고 있는 전교조는, 현 정권의 주요 지지기반의 하나 아닙니까.
((사례 추가))

과거사 규명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지난 역사에 긍지를 가지는 애국 세력을 모독하고 무력화시키고, 근대화·산업화의 역사 중에서 어두운 측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자기들의 정적인 박근혜 대표를 공격하여 약화시키겠다는 정략이 가장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사례 추가))

이 4대 악법안 각각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른 발제자 분들께서 더 상세한 말씀들을 해주실 것입니다만, 총괄적으로 보아서, 유럽식 사회주의의 재탕이라고 성격 규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세계사적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오히려 반개혁적인 일들로서,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악법안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세기는 사회주의의 실험장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을 전후하여 세계적으로 그 실험의 결론이 이미 내려졌던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실패한 실험이었다는, 세계사적인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유럽 여러 나라들은, 국가교육, 노동자천국, 복지우선 등을 정책 기조로 삼아왔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미국·일본 등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국가경쟁력, 사회경쟁력에서 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유럽 국가들도 통합유럽 EU를 추진하고, 제3의 길 등 우파적인 정책기조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대에 뒤떨어지게도, 유럽 국가들이 쓰다가 아니라며 버린 그런 유럽식 사회주의를, 현 정권이 「진보」랍시며 어거지로 강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제발표(국가보안법 관련)

- 국가보안법 폐지가 저지되어야 하는 이유 -

김상철 (변호사/법학박사)

제보·제작을 부탁드릴게요
제작한 드라마에 대한 감상
제작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글
제작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글

1. 현행 국가보안법(1991. 5. 31. 개정)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없음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미 명백히 하였다.

- (1) 현행 국가보안법은 1989년 12월 당시 민주당이 국보법 폐지 대체 입법안을 제출하자 당시의 정부 여당이 1991년 5월 개정한 것으로서, “그 이후 아직 남용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박상천 전 법무부 장관 겸 새천년민주당 대표 2004. 10. 19자 동아일보 칼럼)
- (2) 헌법재판소는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102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우리 재판소는 위 조항들에 대하여 1996. 10. 4. 선고 95헌가2 결정(판례집 8-2, 292-296), 1997. 1. 16. 선고 92헌바6등 결정(판례집 9-1, 1-44), 1999. 4. 29. 선고 98헌바66 결정 및 2002. 4. 25. 선고 99헌바27·51(병합) 결정(판례집 14-1, 279-288) 등에서 이미 합헌의 견해를 밝힌 바 있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을 구법 제7조 제1항과 대비하여 보면 두 가지 점에서 뚜렷한 변경이 있었다. 그 하나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한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구법 제7조 제1항 후단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라는 부분을 삭제한 대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라는 부분을 삽입한 점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된 것은 입법자가 구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우리 재판소의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바, 구법규정보다는 그 구성요건이 훨씬 명확히 규정되었다고 보여지며, 그래도 남는 용어의 추상성은 법적용·집행자의 합리적 해석에 맡겨도 된다.

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을 말하는가에 관하여는 앞서 본 우리 재판소의 결정내용이나 학설, 판례에 의하여 그 개념정립이 되어 있고,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도 우리 재판소의 위 결정들의 판시취지에 따라 이를 합법적(특히 이 법의 입법목적을 규정한 법 제1조 제1항과 그 해석준칙을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개념의 불명확성은 제거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풀이하면, 법 제7조 제1항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이 법의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되었으며, 현행법은 제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 규정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축소하였고, 나아가 제1조 제2항에서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집행자의 합헌적인 법해석과 적용을 이끌어 내는데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후단에 새로이 신설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라는 구성요건 중 "변란"이라는 개념은 1948. 12. 1. 법률 제10호로 공포, 시행되었던 구법에서부터 계속 사용되어온 용어이고,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의 정의규정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이미 판례에 의하여 그 개념이 상당한 정도로 정립되어 있어 개념의 불명확성은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도 "구

성원", "활동", "동조"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나 구법규정과는 달리 이들 개념은 모두 같은 항 앞머리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과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고, 이 주관적 구성요건을 우리 재판소의 위 견해와 같이 제한 해석한다면 이들 개념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은 제거되고, 국가보안법 제7조는 형법상의 내란죄 등 규정의 존재와는 별도로 그 독자적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필요 최소한도의 제한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법 제7조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전제로 하는 조항들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항에서 그 위헌성이 제거된 이상 이들 조항도 그 구법규정이 떠고 있던 위헌성은 제거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이 조항들 그 자체에 어떤 독립적인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위 결정의 판시 이유는 이 사건 심판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위 결정의 선고 이후에 그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따라서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대법원은 2004. 8. 30. 2004도 3212 사건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비록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서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7281 판결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북한이 이제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거나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는 등의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50여 년 전에 적화통일을 위하여 불의의 무력남침을 감행함으로써 민족적 재앙을 일으켰고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도발과 위협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향후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월함이 증명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체제를 양보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이념과 요구에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이상, 북한이 직접 또는 간접 등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여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의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

2. 자유민주주의는 방어민주주의를 내포하며, 선진문명국들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법제를 가지고 있다.

(1)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56년 당시 독일공산당(KPD) 해산결정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 전투적 방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전투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라고 명명한 바 있다.

미국에는 형법 외에 '전복활동통제법'이 있고, 프랑스는 형법에서 입헌제도의 파괴·변경을 위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독일은 형법에서 국가반역죄, 외환제, 내란죄 외에 '민주적법치국가위해죄'의 한 장(章)에서 제84조 내지 제91까지 7개조를 두고 있고, 그 외에 '단체규제법'(Gesetz zur Regelung des Offentlichen Vereinsrechts)을 두고 있다.

(2) 여기에서 독일법제의 특기할 조항을 살펴본다.

i) 형법상의 국가반역죄(Landesverrat; 형법 제93조, 제94조. 우리나라의 간첩죄에 해당)

독일형법 제94조는 국가반역죄를 규정하면서 국가기밀을 "외부권력집단(fremde Macht)에 전달하는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외국 뿐 아니라 정부를 침침하는 권력집단을 위한 국가기밀누설행위를 포함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독일통일 전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은 독일민주공화국(동독)과 사이에 국가조약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동독을 위해서 한 국가반역행위는 형법 제94조의 국가반역죄, 제95조의 국가기밀누설죄, 제96조의 국가기밀수집탐지죄, 제97조의 과실국가기밀누설죄, 제98조 국가기밀수집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죄 및 활동의 의사표시죄, 제100조의 a 국가반역을 위한 위·변조죄에 해당하게 된다

- ii) 형법상의 위헌정당유지죄(형법 제84조), 대체조직금지위반죄(형법 제85조), 위헌조직선전죄(형법 제86조), 위헌조직표지사용죄(형법 제86조의 a), 반헌법적태업죄 및 태업예비죄(제87조, 제88조), 연방연방군 및 공안기관에 대한 반헌법적공작활동죄(제89조), 연방 대통령 및 헌법기관에 대한 반헌법적 모독죄(제90조, 제90조의 a, b)

특히,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은 물론 그 대체조직이나 '헌법질서에 반하는 목적을 추구함을 이유로 금지되 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조직적 결합을 유지하거나 단체구성원으로 활동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형법 제84조, 제85조), 위헌조직의 선전물의 제조, 보관,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86조).

iii) 단체규제법

단체규제법은 단체의 목적 또는 활동이 형법에 위배되거나 헌법질서에 반한다는 것이 관할관청의 처분으로 확인되는 경우, 단체의 모든 활동을 금지되고 대체조직도 금지된다.

iv) 형법상의 불고지죄(제138조)

독일 형법은 제 138조에서 내란죄 및 국가반역죄(간첩죄), 외환죄 등 국사범 뿐 아니라 유가증권위조죄, 살인죄, 강도죄 및 공공위해죄의 대부분에 대하여 불고지죄를 처벌하고 있다.

3.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보공백을 초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위배와 혼란을 가져온다.

(1) 여당안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사실상 형법에 '내란목적 단체' 규정을 신설하였을 뿐, 북한을 위한 간첩죄, 찬양고무·선전선동죄 및 이적단체구성죄를 모두 폐지하였다.

즉, 명시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라고 하지만 않으면 그 어떤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나 대한민국체제 전복을 위한 선전선동도 처벌할 수 없다.

이는 북한공산집단의 대한민국전복활동을 위하여 대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

일각에서는 내란죄나 간첩죄의 합리적 해석을 통해 북한을 위한 간첩죄만은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확대해석이야 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는 유추해석으로서 인권침해를 가져온다.

(2) 국가보안법은 북한공산집단의 대한민국전복공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켜온 법제로서 대한민국 전통성의 안전판이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왔는데 지금 그 주장을 들어주는 것은 안보공백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신념을 가졌다면 북한공산집단의 멸망이나 대한민국 전복공작 포기시까지 국가보안법 체제를 유지해야 마땅할 것이다.

현행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유사한 대체입법을 한다거나 국가보안법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

4.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도는 공산당 합법화 및 국보법위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인권옹호를 위해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 26일의 헌법재판소 심판과 8월 30일의 대법원 판결로 국가보안법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다고 판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9월 5일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의 심판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는 2003. 6. 12. 일본방문시 공산당의 활동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공산당 활동을 조장하자고 하는 것이 다름없다. 이미 북한 노동당 정강정책의 상당부분을 따라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있는데, 그런 정도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보법 폐지는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러한 활동을 합법화하고 고무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모든 사람은 국보법폐지법률안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5. 헌법의 원칙으로 볼 때盧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은 4대 위헌악법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첫째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은 북한공산집단의 대한민국 전복공작 앞에서 국가를 보위하는 법제를 폐기시키는 대신, 유추확대 해석 없이는 간첩조차 처단할 수 없는 형법개정안을 내놓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5조, 제66조가 정하는 대통령과 국군의

국가의 안전보장, 영토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수호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본다.

둘째로, 사학법개정(안)은 사학재단의 건학이념 구현과 관련하여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자주성, 제23조의 사유재산(사학재단)제도의 보장, 제20조의 종교(종교교육)의 자유, 제10조의 행복추구권(건학이념)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로, 언론법(안)은 독자가 선호하는 신문은 위축시키고 기피하는 신문은 조장해줌으로써 독자의 신문선택권을 왜곡시키고, 주요 신문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부간섭을 가져옴으로써 헌법 제21조의 언론의 자유 및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독자의 신문선택)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가져온다.

넷째로, 과거사규명법(안)은 헌법 제13조의 소급입법금지, 일사부재리의 원칙,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처우 금지, 제23조의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의 침해를 가져올 내용이 너무도 많다.

우리는 1987년 민주화의 결실로서 모든 정당, 사회단체, 운동권의 합의 아래 국민투표 93.1%의 찬성으로 채택된 현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 자랑스럽다. 이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나라사랑, 민족사랑, 이웃 사랑임과 동시에 영구불변하는 진리와 자유와 정의의 수호운동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떳떳하며 보람을 느낀다.

주제발표(사립학교법 관련)

- 대한민국체제를 바꾸려는 사학관련법률개정안 -

임 광 규(변호사)

1. 2004. 10. 20에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각 개정안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2. 학교법인 이사회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 대학에서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사립학교법중개정안14조3항)을 두고,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회대표 학부모회대표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고(초중등교육법중개정안31조2항), 대학평의원회는 교수회대표 학생회대표 직원회대표 동문 및 지역대표로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고등교육법중개정안27조의2,2항)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은 피용자이거나 고객입니다. 지역사회인사는 잠재적 고객입니다.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재산을 출연 투자하여 운영하는 설립자와 그가 지명한 재단법인(학교법인은 재단법인의 일종) 이사들은 사용자겸 투자자입니다.

재단법인 투자자는 주식회사의 투자자와는 달리 이익배당을 받을 생각이 없는 투자자이지만 자기가 투자한 학교가 번영하고 탁월해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투자자입니다.

피용자나 개인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나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이 사용자로 되겠다는 자체가 자유경제체제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겸 투자자의 학교운영목표와 방침이 있는데, 피용자와 고객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로 된다는 것은, 사용자나 투자자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기본(헌법 제119조)을 허무는 것입니다.

3. 또 교무(教務)와 학사(學事)에 관하여 이사회에 관여를 배제(사립학교법중개정안16조1항6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재(私財)를 투척하여 학교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교무와 학사의 기본(基本)』에 관하여 자기의 교육이념과 교육방법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 교육이념과 교육방법이 대한민국의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데도 이것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이념과 정책을 봉쇄하고 교사 교수(피용자)와 학부모 학생(고객)이 자기들의 이념대로 『교무와 학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학부모나 학생은 들러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3년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잠시 거치는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영향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내신성적을 좌우하는 교사에게 전전긍긍하는 학부모들이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할것이고, 교원인사위원회나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사들이 참여하는 마당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사들의 들러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연구와 가르침에 충실한 교수와 대학내 정치운동을 하는 교수로 갈라져서, 후자가 연구와 가르침대신 교수회운동에 열을 낼 것입니다.

공부대신 사회내지 정치 운동에 열심인 학생들이 교수회운동에 열을 내는 교수들과 연대하여 학교정치를 시끄럽게 할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연구와 가르침에 몰두하려는 교수들은 그런 학교정치를 피하게 되니까 학교는 점점 운동권 세상으로 됩니다.

교육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교무와 학사』는 전국의 어느학교나 획일화하여 하향평준화할 것입니다. 학교라는 곳은 학생들을 우수하게 가르치려고 애쓸 생각이 없는 교사나 교수의 낙원이 될 것입니다.

관련 노동조합에서는 편한 신분보장을 위해 중앙본부로부터 더욱 획일화된 지시를 계속 내려 보낼 것입니다.

학생 학부모는 이제 다양한 학교나 다양한 교육내용중에서 선택할 길이 더욱 막히게 됩니다.

학교설립자의 『교무와 학사의 기본』이 그렇게 모조리 마음에 않들면, 아예 사립학교를 폐지하고, 국가가 투자하여 학교를 세우고, 교사와 학부모에게 『교무와 학사』를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 차라리 솔직할 것입니다.

소비에트연방등 공산주의국가가 사립학교를 모두 폐지하여 전체주의 이념을 실현한 일이 있었입니다.

4. 학교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한 것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가 심의하고서 이사회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사립학교법중개정안29조4항)

심의(審議)와 결정(決定)을 합쳐야 비로소 의결(議決)이 되는데, 피용자와 고객더러 심의를 해 놓으라는 것이 무슨 의도인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예산을 『심의』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심의』와 『의결』을 분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문구상으로는 애

매하지만, 그 심의해서 정한 것과 틀리게 이사회가 의결을 하면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뒤집으려고 이런 심의와 의결을 분리하는 반법리적(反法理的) 문구를 고안해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반법리적이고 모순되는 용어를 법률규정으로 넣어서, 학교현장에서 이사회의 권한을 탈권(奪權)하려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기부하고서 자유롭게 창의를 발휘해야 할 학교법인 경영자를 반신불수로 만드는 것은 자유롭게 창의를 발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에 어긋납니다.

5.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의 각 3분의 1이상을 교사회 교수 회의 각 추천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사립학교법중개정안53조2항단서, 62조2항단서).

인사권과 징계권을 갖지 못한 사용자나 투자자는 학교법인의 기본 목표와 교육이념에 역행하는 피용자를 통솔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사권이나 징계권은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며 불법 부당한 인사나 징계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심판에서 부인됩니다.

개인이든 주식회사든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자유와 창의를 발휘하는 것을 기본으로 정한 것이 자유경제시스템이며 이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학교법인이 그냥 쉽게 학생을 훌륭히 가르치게 되고, 저절로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게끔 인사관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거나, 덜 현명하게 판단하면, 그 학교법인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성적이 낙후될 것이고,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성의없는 분들이 될 것이며, 결국 실패한 학교법인으로 도태될 것입니다.

잘하는 쪽이 명예롭게 되고 잘하지 못하는 쪽이 도태되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며, 자유로운 사회가 번영하고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이치입니다.

이러한 실패와 도태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 피용자들인 교사들이나 교수들이 학교법인의 운명을 좌우할수 있는 인사와 징계에 투표권을 갖는 것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6.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통령이 정하도록 하겠다(초중등교육법 중개정안32조4항)는 것은 정부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로 하여금 학교를 지휘할수도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의 현장 학칙 제정으로부터 예산결산, 학생 정원 증감, 학과 학부 개폐, 학생선발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겠다고 합니다(고등교육법중개정안27조의4).

사용자겸 투자자가 운영해야 할 학교에 대하여 피용자나 고객이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형식으로 학교를 『운영』 하겠다는 것은, 『피용자나 고객이 학교를 접수』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교사들이나 교수들과 학부모(초중등교)나 학생(대학)들이 그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싶고』, 또 『잘 운영할 수 있다』 면 차라리 교사들 또는 교수들과, 학부모들 학생들이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면 될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다면 국가에서 국민세금으로, 교사될 사람들과 학부모들, 교수될 사람들 직원될 사람들과 학생될 사람들의 학교설립을 지원해주면 될것입니다.

여러사람이 뜻여서 조직하면 사단법인이 될 터인데, 이런 사단법인인 학교는 제대로 되지 않고 몇년안에 망할것입니다.

모든 교사를 똑같이 대접해 주고, 모든 교수직을 차별없이 정년퇴직 할 때까지 보장해 주고, 연구와 가르치는 것은 다 같이 편하게 하고, 급여는 넉넉하게 해 주는 예산을 만들고, 없애야 할 학과는 그대로 두고, 새로 도입해야 할 학과는 뒤로 미루게 될 것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없는 여러사람의 사단법인이 개인사업자나 주식회사나 재단법인과 상대하여 치열한 수월성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은 예가 있는가 찾아 보십시오. 국내외 어데를 뒤져 보아도 그런 예는 전혀 없습니다.

우수하게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찾아 올 리가 없는, 이런 주인 없는 학교는 실상 망하는 조직입니다. 조직을 망하게 하는 능력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사회더러 자기들이 맡을테니 설립자나 이사들은 투자한 재산이나 내놓으라는 것이 이번의 사학관련법개정안입니다.

실상 어느 교사되려는 사람들이나 어느 교수되려는 사람들이 어느 학부모들이나 어느 학생들과 함께 그런 학교를 사단법인으로 만들테니 참가하라고 공모(公募)하면, 제정신 가진 교사될 사람이나 교수될 사람이나 학부모나 학생치고 참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남이 일생을 땀과 눈물로 축적한 재산으로 보람있는 육영사업에 투자한 것을 빼앗아서『공짜로 학교운영을 하겠다』고 덤비는지부터 스스로 반성해야 할것입니다.

재산을『이익분배』아닌『사회공헌』의 목적으로 투자하여 학교법인을 설립운영하는 설립자와 설립자가 지정한 방식대로 선임한 이사들의 권리를 탈권(奪權)하는 것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7.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교사회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고 (초·중등교육법중 개정안31조1항),대학에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의 설치를 강제하겠다는 것입니다.(고등교육법중 개정안 27조의2, 1항)

학교안에 법정단체로서 사단(社團)인 교사회, 교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경비까지 재단법인인 학교법인더러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사단법인등기만 안되었지 이 법정 사단은 사단법인과 똑같은 기능을 가져 대표와 의사결정기구와 총회를 가지고 자체예산과 자체직원을 둘 것입니다.

경비의 문제는 그렇다 치고, 학교안에서 노동조합에 추가하여, 피용자로 조직된 또 하나의 단체가 피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용자의 이념과 교육방법을 관철하려고 학교법인의 설립이념을 무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선택권은 있으되 해고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약자보호의 입법취지인데, 이런게 아니라 교사들과 교수들은 일단 교사나 교수로 채용되고 나면 교원 노동조합과 다를 것도 없는 「사단」의 힘으로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들로 3분의1 이상 들어가 학교법인의 사용자를 겸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교수위원회를 움직일 것이며, 학교법인의 예산을 좌우하고 「교무와 학사」를 독점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에 관한 권리, 자유롭게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변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8. 오랜 법철학의 역사에서 법의 가장 원초적인 기초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Pacta sunt servanda)』입니다. 서로를 죽이는 전쟁 당사자끼리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본 아닌가. 그런데 사학관련법률을 고치자는 국회의원들이 이 『최고의 법의 기초』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세우는 설립자들이 기금과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을 만들 때에 정관을 정해놓고, 국가가 이 정관을 승인하여, 이 정관대로 사학을 운영하기로 서로 굳은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은 설립자들이 아낌없이 재산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 재산이 재단의 소유로 되었지만 설립자는 그 정관에 따라 학교를 운영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가가 법률을 고쳐 학교운영의 권리를 빼앗고, 이 정관대로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게 만 들면, 국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한당』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출연(財產出捐)직전에 이런 약속배신을 미리 알았드라면 누구도 이렇게 빼앗길 권리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약속을 배신한 나라가 되어 누구로부터도 믿지 못할 나라가 될 갈림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2004. 11. 9)

주제발표(언론관계법 관련)

- 열린우리당 언론관계법 검토 -

정 병 국(국회의원)

1. 총 평

- 여당의 언론관계법안은 1980년에 제정된 신군부의 '언론기본법'을 다수 원용한 것으로 최대한의 규제를 통한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음. 또한 정부에 비판적 신문 통제에 악용될 소지를 많이 지니고 있음.
- 신문은 기본적으로, 방송과 달리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발행이 가능한 사적소유의 영역임.
- 신문의 독과점은 주장하면서, 이보다 훨씬 심한 방송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정권에 비판적인 특정신문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임.
 - 2003년말 기준, 파악이 가능한 36개 일간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조중동 시장점유율이 44.17%로 나타남(문화관광부), 2002년 기준 방송3사시청점유율 78.7%(방송위원회)
- 여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장악을 위한 구색맞추기용으로 큰 내용이 없음. 다만 민영방송에 대한 통제의도가 엿보이는 일부 조항이 있음.

조중동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초점.

2. 구체적인 문제점

- 여당안은 '시장점유율 기준 상위 1개사 30%, 3개사 60% 초과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공익성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전력이나 통신도 50%가 기준임에도 30%를 주장하는 것은 신문에 대한 지나친 통제임.

- 또한 여당안은 시장점유율 판단기준을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장 획정기준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판적인 신문에 대한 통제 우려가 있음.
- 여당안은 노사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위원회의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제조항은 편집권독립이 아닌 또다른 형태의 편집권 간섭이 될 수 있음.
- 여당안은 정부가 신문사의 모든 경영자료를 보고받게 함으로써 신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관치언론화 우려가 있음. 그 보다는 ABC 제도를 강화하여 발행부수의 공신력과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신문광고비 책정의 과학화, 체계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여당안은 독자권익위원회, 편집위원회, 내부심의기구, 고충처리인 등 독자권익 증대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가하여 신문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하고 있음.
- 여당안은 광고게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윤리' 침해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모호한 기준으로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 여당법안에 추가된 광고분량 제한 조항(전체지면 중 50% 초과금지)은 언론기본법 제정시에도 검토만하고 제정은 포기했던 조항일 정도로 문제가 많은 조항임. 이것외에도 언론기본법의 독소조항을 많이 원용하고 있음.

3. 향후 과제와 전망

- 열린우리당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인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관련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움.
- 한나라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내부용역을 거쳐 신문법, 언론중재법, 국가기간방송법안을 마련 중에 있음.
- 여당의 언론법안이 '최대한의 규제로 최소한의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언론통제법'인데 반하여 이번에 마련될 법률안은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기본원칙하에 정치적 목적에 의한 언론장악이 아닌 언론발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향후 언론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적 개선, 신문과 방송의 공공성·독립성 확보 및 방송의 제자리 찾기, 디지털시대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언론산업의 경쟁력 강화, 뉴미디어 출현에 따른 방송통신융합 법제화 추진 등 종합적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임.

주제발표(과거사관련법 관련)

유 기 준(국회의원)

1. 들어 가는 말

< 역사란 무엇인가? >

E.H. 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 했음. 여기서 “끊이없이”란 말이 매우 중요한데, “역사는 끊임없이 재해석 된다”는 말임.

즉,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인식하고 미래에 대비한다는 역사관을 밝힌 것임.

미시사와 거시사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사란 사건을 보는 인식의 차이임. 같은 과거사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인식에 따라 천차만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임.

때문에 객관적인 인식과 미래를 위해 어떻게 활용하고 귀감이 되는가가 매우 중요함.

결국 역사란 역사학자의 평가 뜻이고 구성원이 그 평가를 동의하는 것이 역사라 생각 함.

특정권력과 집단에 의한 의도된 해석이 결코 역사는 아니라 생각함.

그런 점에서 역사를 역사에 맡겨야지, 법으로 역사를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임.

우리 역사는 5천년이 넘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功과 過가 있었고 그런 역사는 끊임없이 재평가되고 이어져 내려왔음.

결코 재해석되고 재평가 되어야지 단죄되고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함.

- * 외국의 사례에도 특정 권력이 역사를 재해석하고 재단하는 정치적 의도에 의한 과거사 조사는 없었음.

- 문화혁명 당시 펍박받았던 등소평은 정권장악 후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모택동 격하 운동을 전개하지 않았음. “그의 공적은 1차적인 것이고 그의 과실은 2차적인 것이다”고 역사를 있는 그대로 엄정히 평가하고 보복하지 않았음.
- 만델라 취임 이후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과거사를 철저히 조사규명하되 처벌과 응징보다는 역사적 청산에 초점을 두었음. 법적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사면과 화해를 추구하여 국민이 통합·화합하는 계기를 만들음.

2. 여당안의 문제점

여당의 과거사 정리법은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임.

○ 앞의 친일진상규명법은

- 이 법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고 수단까지 정당화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함.
- 우선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것임.

과거 일제하에 무슨 자리에 있었던 사실만으로 무조건 친일행위자로 단죄하겠다는 것임. 그러면 그 시대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 즉 국민 모두가 친일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임. 모두다 민족의 죄인이 되는 것임. 60~100년 전의 先代의 일로 인해 현재의

국민이 인권을 침해받을 위험이 있음. 조사대상자의 의견진술권 및 증거자료 열람권을 삭제(현행법 제24조2항)하여 조사대상자 측의 권리만 삭제되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할 위험이 있음.

-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임.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나 처벌할 수 없음에도 과거사를 조사해서 얻을 것이 없음에도 국민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가 됨.
- 야당의 위원회 구성권 참여를 배제(개정안 제4조)했음. 자신들 의도대로 역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임.
- 위원의 자격요건조항 및 친일, 친공 관련자 위원배제조항을 삭제하여 이들이 붉은 완장을 차고 설치도록 입법이 됨. 간첩, 빨치산 전력자 등 정체불명인사가 위원으로 임용되어 친일청산문제가 용공적으로 왜곡되거나 북한의 대남전략에 악용될 위험이 있음.
-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 할 수 있도록 함. 이에 위반시 3년이 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이는 법관이 아닌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1조(평등원칙), 헌법 제12조 제3항(영장주의) 위반임.
위반시 혈사처벌?
뿐만 아니라 거부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형벌이 너무 과중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임.
- 모해진술자 등 처벌을 하지 못해 무고당한 사람만 피해를 보게 됨. 특정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일방적으로 친일행위를 했다라고 공표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으므로 후손들만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음. 현대판 연좌제를 도입한 것임.

○ 다음으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은

- 과거사를 정리하자며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기 보다는 과거의 어두운 부분만을 부각시켜 국민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내용만으로 되어 있음.
- 그 결과 과거사에 얹매여 후대를 위한 국가비전을 제시하는데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큼. 지금 정국을 보면 여당은 과거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당면 현재 문제인 경제 등 산적한 민생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음. 마치 과거사 정리가 개혁이고 민생문제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음.
- 50여년이 지난 역사를 들춰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개혁이고 경제회생을 위한 국정과제 우선 순위가 될 수는 없음.
- 지금 국가현실은 과거에 얹매여 한눈을 팔 상황이 아님. 휴전선 철책선이 뚫렸고, 국가 안보의 한축을 지탱하던 미군도 짐을 꾸려 떠나고 있음. 경제는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임. 장사가 안되고, 실업자가 넘치고, 신용불량자로 인격과 가정파탄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며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음.
- 위원회가 결정하기만 하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여 마구 조사하겠다는 것임. 시효가 지난 역사적인 사실을 사법적인 강제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임.
- 위원회가 동법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모두 조사하겠다는 포괄적인 법을 만들었음. 정치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건은 다 조사해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뜻임.

- 조사자료의 발굴 등 중요한 일을 하는 사무처 직원의 임용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여 역사를 대통령의 정치적 의중에 따라 해석이 가능하게 제도화 했음. 피해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직원으로 채용돼 자의적으로 역사를 조사하고 해석해도 막을 장치가 없음.

- 유족이나 그 친족 그밖의 사건과 관계되는 사람도 죄인취급을 함. 자신과 현행법적인 문제가 없는 역사적인 사안에 대해 연좌제를 걸어 동행명령장을 발부함.
-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모해 사실이 언론 등에 공개돼 치명적인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초래함.
- 사법적이고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조사가 최장 6년간 지속(4년조사 후 2년연장 가능)돼 정치적인 공방과 국민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돼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고 민생은 파탄날 가능성이 있음.
- 최장 60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조사하는 것은 소급 입법이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남.
- 4년간 300억원의 위원회운영예산과 필요시 보상금, 기념관 건립 등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들어감.

3. 맷 음 말

* 여당의 목적은 과거사를 조사해서 한나라당을 과거에 뿌리를 둔 罪過가 많은 정당으로 이미지를 덧칠하고,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야당지도자를 흡집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림.

- 국민들도 여당의 이런 의도를 간파하고 있음.
-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당이 의도를 갖고 과거사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면 한나라당의 대안은 무엇인가?

과거를 무조건 덮자는 것이 아님. 조사하되 초법적인 발상이 아니라 법테두리내에서 조사하여 민족정기를 바로세울 것은 세우고, 그 조사 목적은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화합을 목표로 하자는 것임.

- 본의원대표발의로 한나라당에서는 “현대사조사연구를 위한 기본 법안”을 제출했음

첫째, 여당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법의 목적이 특정인과 정파 및 수장을 음해하고 과거사를 이용해 국민갈등을 부추기는데 있지 않고 미래를 위한 화해와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임.

둘째, 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4대원칙을 제시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되

-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지키는 등 현행법을 존중하고
-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 역사를 특정 정치권력의 해석에 맡기는 것을 피하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요건, 조사방법과 권한 등을 정하는데 노력했음.

셋째, 역사는 청산의 대상이 아닌 승계의 원칙하에 功과 過를 균형 있게 조사하기 위하여 항일운동과 해외동포사 등 역사의 궁정적이고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功적인 면을 부각시키도록 하였고, 특정 이념에 기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정권과 관련된 각종사건도 함께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음.

넷째, 과거사는 자료의 멸실 등으로 단기간에 조사연구가 불가능하므로 6년간 충분히 연구하고 필요시 3년 연장하도록 하고, 실무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산하에 연구소를 두고 5개의 연구실을 두어 심도있는 조사연구가 되도록 배려하였음.

다섯째, 특히 과거사정리법이 특정인의 명예훼손 등 마녀사냥식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동법의 목적과 원칙,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조사대상자의 보호,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음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였음.

‘자료’ ‘증거’
‘증거’ ‘증명’ > 사체적증거 시간

* 참고자료

< 여당안과 비교한 차이점 >

구 분	한나라당안	열린우리당안
명 칭	현대사조사·연구를 위한 기본법안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목 적	미래를 위한 진실규명과 화해와 통합을 지향	반민주적 반인권적 공권력 행사 규명을 통한 국민의 화해와 통합
원 칙	① 정치적 중립의 원칙, ② 당사자 불개입의 원칙, ③ 화해와 통합의 원칙 ④ 균형의 원칙 등 4대 원칙	위원회 권한 업무는 독립수행
기 구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원산하에 현대사조사 연구 위원회(7인) - 위원장: 국회 추천하여 학술원 회장이 임명 - 위원자격: 역사고증·사료 편찬 10년 이상, 전임교수 10년 이상, 법조10년 이상,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관련 경력 5년 이상자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현대사조사연구소를 두고 연구 기획조정실, 독립운동 조사연구실, 재외동포사조사연구실, 국가권력 남용조사연구실, 친북이적조사 연구실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동의 대통령 임명(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4명 포함 13명) - 위원자격: 법조 10년 이상, 부교수 이상 8년 재직, 명망 있는 시민 단체 대표(국회의원, 지방의원, 공무원, 정당원 배제) - 진실위원회, 화해소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 - 사무처 설치와 사무처장 1인 포함 130인 직원 - 자문기구의 설치
진 상 규 명 범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항일독립운동, ② 재외동포사, ③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④ 북한정권·좌익세력의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⑤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친북이적 활동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감점하: 항일독립운동 - 해방 이후: ① 8.15에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② '48년 정부 수립 후 공권력 의한 사망 실종 상해 인권침해 사건 ③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중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

구 분	한나라당안	열린우리당안
위원회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조사대상 및 대상자 선정, 조사연구대상자가 행한 행위의 조사범위 결정, 공공기관에 자료제출 요구권 및 열람요구권, 조사대상자 출석 요구권 및 진술서 제출 요구권 - 출석 및 자료제출거부시 1000만 원 미만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서 및 자료제출 요구권 - 관할지방검찰청에 대한 압수 수색검증영장 청구의뢰권, 동행 명령권, 통신금융정보 요구권, 고발수사 의뢰권, 사면 감형복권 의뢰권, 청문회 개최권 부여 - 동행명령거부시 2000만 원 미만 과태료
조사기간 및 공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구성 후 6년, 위원회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3년 이내 연장 - 조사활동 결과 매년 정기 국회 개회 30일 전 국회에 보고, 조사 종료 직전에 국회 및 대통령에 보고하고 사료를 편찬하고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간 활동 후 2년간 연장 - 조사 종료 사건을 지체 없이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하고 공표
인권 보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권보호 - 조사 대상자의 이의신청권 - 조사 대상자 모해 목적 허위 진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자에 대한 처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대상자의 이의신청권 - 타인 모해 목적 허위 신청자 처벌

4대악법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관련법 -

정 책 위 원 회

「국가보안법」 폐지되면 이렇게 된다

■ 평양 노동당 행사 허가 안받고 참여, 처벌 어려움

- 국내 인사가 평양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행사에 허가를 받지 않고 참가하더라도 열린우리당의 형법 개정안으로는 처벌이 어렵게 된다.
- 보안법상 잠입·탈출을 비롯해 찬양·고무, 이적 표현물 제작·배포, 회합·통신죄 등이 모두 삭제되면 형사처벌의 근거가 없어진다.

■ 서울시 등 지자체 독립공화국 선언, 처벌 불가

- 서울시가 현 정부의 수도 이전 방침 등에 반발, '서울 공화국'으로의 독립을 선포해도 형법 개정안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 즉, 서울시의 공화국 선포는 국토를 침절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폭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내란목적 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북한공작원이 국내서 간첩행위, 처벌 어려움

- 공작원이 국내에 들어와 정부 및 주요 단체의 기밀을 수집해 정기적으로 북한 노동당에 보고한 경우 열린우리당 안으로는 처벌 여부가 불분명하다.
- 보안법에서는 북한을 간첩죄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외국에 한정하는 형법상 간첩죄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간첩죄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 열린우리당은 "남한에 내려와 정부 기밀을 빼내갔다면 내란 목적 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란죄로 처벌하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간첩행위를 모두 내란 목적이 수반되는 경우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 북한 공작원과 돈을 주고받거나 은신처 제공, 처벌 불가

- 보안법상 금품수수 및 편의제공 죄에 해당하나 열린우리당 안으로는 처벌을 못 한다. 은신처 제공의 경우 공작원이 폭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형법상 범인(내란죄 사범) 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법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북한 공작원에게서 돈을 받은 경우도 이 돈으로 폭동 준비 활동을 했다는 사실(내란예비 음모)이 전제돼야 한다.

■ 시장경제 부인하는 공산당 창당, 처벌 어려움

- 보안법에 따르면 국현 문란을 목적으로 한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만 열린우리당 안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안 된다. 공산당원이 폭력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내란 목적 단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활동을 막을 수 없다.

■ 북한 노동당 홍보, 처벌 불가능

- 보안법은 물론 열린우리당의 안도 사법처리 대상으로 정했다. 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형법상 내란목적단체 가입죄로 바뀌는 정도다.

- 그러나 대학생들이 모여 '북한 노동당 지지 동호회'를 만들어 노동당 강령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동호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 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단체는 이적단체로 규정, 이를 구성하거나 가입할 경우 처벌하고 있지만 형법 개정안에는 이런 개념이 없다.

■ 서울 집회서 인공기 흔드는 행위, 처벌 불가

- 현재는 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나 열린우리당 안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 열린우리당은 형법상 선전선동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란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 김일성 주체사상 연구강좌 개설, 처벌 불가

- 형법 개정안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단순히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남한을 무력 통일하자고 기도하기 전에는 처벌 근거가 없다.

■ 북한 공작원이 국내서 내국인 접촉, 처벌 어려움

- 북한 공작원이 국내에 침투해 노동당의 지령을 전파하는 경우도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공안 당국의 설명이다.
- 지령 전파가 아니라 단순히 접촉한 것만으로도 현재는 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죄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사법 처리의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다.

■ 북한군 침투 목격하고도 신고 안해, 처벌 불가

- 북한 군인들이 잠수정을 타고 동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현재는 보안법상 불고지죄에 해당된다.
-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불고지죄를 삭제해 처벌 근거가 없다. 열린우리당은 불고지죄를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간주하고 있다.
- 공안 당국의 수사 관계자가 간첩을 적발하고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 친구와 만나 주체사상 지지 발언, 처벌 불가

- 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나 열린우리당 안으로는 처벌 대상이 안 된다.
- 열린우리당은 "주체사상을 전파하면서 폭동 동조 세력을 규합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선전선동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검찰도 "최근에는 수사당국도 찬양·고무죄는 다른 혐의가 있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김일성 일대기 인터넷 유포, 처벌 불가

- 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정황)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자는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근거해 북한의 주장이 담긴 내용을 전파하는 인터넷 매체와 유포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조항 또한 삭제키로 해 처벌이 안 된다.

「사립학교법」 통과되면 이렇게 된다.

사학이 전면 붕괴됩니다.

1. 사학경영주체들이 나름대로의 건학이념을 유지·계승하기 어렵게 되어 집단적으로 붕괴하게 된다.
2. 특히 많은 종단에서 설립한 학교들이 종교 관련 교육을 못하게 된다.
3. 학교가 이념교육과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하고, 교육의 수준은 급격히 하향평준화되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
4. 정부의 교육개혁의 방향인 '자율화 추진'이 유명 무실화되어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사학제도가 무너진다.

■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면 사학기본권이 본질적으로 훼손되어 결국 사학이 전면적으로 붕괴된다.

* 이사의 1/3과 감사 1인을 학교운영위원회/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

- 개방형이사제는 그동안 전교조 등이 주장해온 공익이사제의 명칭만 바꾼 것으로서,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빙자하여 경영권을 교원에게 넘겨주려는 것이다.
- 학교 경영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개방형 이사제를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것은 사학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로서 위험 소지가 있음.

- 사학에서는 이 제도를 학교운영에 대한 사학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부의 법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악법 조항으로 규정하고, 만약 개방형이사제가 도입되면 집단적으로 학교 문을 닫겠다고 결의하고 있음.
- 최근 사학의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학교구성원들이 학교경영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연된 재산에 의해 설립된 사학재단은 그 목적에 맞는 경영을 사학법인 이사회가 책임지는 것이지 개방형 이사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님.

■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화하면 학교법인의 건학이념 구현이 힘들어지고 학교가 특정이념의 실험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 사립학교의 자율을 보장한다는 것은 이사회의 자율적 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여 이사회의 경영에 간섭하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임. 이는 사학 법인 이사회의 경영권과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게 되어 위험소지가 큼.
- 사립학교에서는 설립자의 건학이념에 따른 학교운영이 되어야 하는 데 만약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가 심의기구화 되면 전교조 등이 장악해 학교경영을 놓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 교사(수)회, 학부모회(고교이하), 학생회(대학), 직원회가 모두 법정기구화 되면 이들의 주도권 다툼으로 학교가 갈등의 정치판으로 화하게 된다.

- 현재 임의조직으로 되어있는 학부모회, 교사(수)회, 직원회를 법정기구화하는 것은 학교의 조직을 사단(社團)화하는 것으로서 혁신 사립학교법제의 기본 성격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조직인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노조 및 법인이사회와의 기능이 서로 중복되어 교육공동체 집단간의 새로운 갈등관계를 발생시키고 투쟁과 대립으로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질될 것임

- 역사적으로 공동의사결정체를 도입한 학교 중에서 발전한 학교는 없음. 다양한 학교구성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참여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나 그 반대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음. 이러한 갈등 심화에 따른 피해는 결국 아동·학생들이 입게 되는 것임.

■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사회(교수회) 추천인사 1/3 이상을 포함하게 되면 인사위 운영이 큰 차질을 빚게 된다.

- 교사(수)회가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1/3 이상을 추천할 수 있게 되면, 교사(수)회가 추천한 교사들이 인사위에 참여하게 되어 인사위 운영시 인사대상자들의 입김이 작용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보안유지도 곤란해져 차질이 우려됨.

■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1회 중임만을 허용하게 되면 학교장의 학교 운영과 통솔이 힘들어진다.

-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를 국·공립학교와 같이 중임제로 전환할 경우 학교장의 교무 장악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제약하게 되어 학교의 지휘통솔이 어려워지고 교원단체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외국은 교육 개혁의 초점을 단위 학교장의 권한강화에 둔 반면 우리나라는 학교장의 권한 및 통제력 약화에 두어왔음. 수년전부터 야기된 중·고등학교 공교육 붕괴현상은 1990년대 중반에 시행된 교장 중임제와 학교운영위원회제도로 인하여 교장의 리더쉽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음.

언론관계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된다.

- 여당의 「언론관계법」은 독재의 전주곡-

■ 비판적인 주요신문에 재갈을 물려 언론의 비판기능을 상실시키고 정권의 홍보기구로 만든다

※ 일간신문 (무료는 제외)의 1개사 시장점유율 30%, 상위3개사의 시장점유율 60%초과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한 조항

- 친여성향의 신문과 인터넷 매체등에 신문발전기금설치와 유통전문법인 설립을 지원하는 등 당근을 주고, 정권에 비판적인 매이저 3사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
- 시장질서의 표준인 공정거래법상의 기준을 강화해서 신문에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 헌법이 보장한 영업권의 침해이자 과도한 제한 규정으로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독소조항
- 점유율의 기준도 불명확하고, 매출액, 구독율, 판매부수 등 규정이 모호하여 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

■ 신문사 수의 기반을 봉쇄해 정부 비판적 언론을 말살한다.

※ 경영자료 신고 조항

- 전체발행부수, 유가부수, 인쇄부수, 배달부수, 구독료, 광고료, 광고수입, 사업수입 등 시행령에 정하는 모든 사항을 결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

- 언론탄압을 위한 악용소지가 있으며, 영업권이나 기업활동의 자유, 헌법이 보장한 경영권, 사기업 자유경영권을 침해하는 외국에 유례가 없는 악법

-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으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함

- 경영자료를 문광부에 신고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시장통제 의도이며 이는 1980년 언론기본법에 명시되었다 폐지된 독소조항.

■ 광고 기반을 봉쇄해 과거의 언론 통제체제를 부활시킨다.

※ 광고규제 조항

- 일간신문 전체지면에 광고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부과와 함께 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배제도록 규제함

- 광고는 신문방송사가 경제적자립과 독자생존유지의 수단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 대통령 마음대로 언론의 논조를 조정해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한다.

※ 편집위원회 구성 의무화 및 편집규약 강제 조항

-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

- 법으로 편집위 의무설치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매우 크며, 구성방법을 시행령에 정한 것은 정부가 구성절차를 관장하기 위한 의도.

- 설치강제는 위헌소지가 있고, 구성방법을 시행령에 둘으로써 정부가 절차와 구성까지 관장하게 되는 경우임

■ 독자권익위원회를 친여인사로 구성하여 항시적 언론통제시스템 구축한다.

※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조항

- 일간신문, 뉴스통신사업자는 10~30인의 독자권익위원회를 구성, 이중 과반수를 편집위원회에서 추천,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토록 함.
- o 신문사당 10~30명의 독자권인위원회 인원의 과반수를 편집위가 추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것으로 친여인사 위주로 구성 항시적 언론 통제가 이루어질 것임
- o 신문과 독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대해 국가가 나서 강요할 수 없다.

■ 사전검열제도를 부활시켜 언론기능을 말살하고 용비어천가만 부르도록 만든다.

※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법

- 신문사업자로 하여금 신문사내에 의무적으로 심의제도를 두도록 강제(7조)조항을 규정한 것은, 고충처리 규정(6조)등의 내적통제를 제도화
- o 언론중재위의 심의 및 시정권고, 국가 지원과 통제를 받는 언론피해상담소 활동 규정은 언론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견제장치를 법제화 하는 규정으로 외적으로 통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임

■ 방송을 어용화시킨다.

※ 방송편성위원회 구성과 편성 규약 의무화

- 방송편성책임자는 방송편성 위원회와의 협의에 응할 의무
- 취재 및 제작 종사자가 참여하는 방송편성위원회 설치,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위원회와 협의하에 방송편성규약 제정 의무화
- o 방송편성위원회 '위원 구성'에 따라 방송의 친여적 편성방향 결정 등을 위한 법적인 정당성 제공,
- o 방송편성위원회가 노조에 의해 절반이 구성될 수 있게 되어 방송의 본질적 기능 상실 우려

■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무너뜨린다.

※ 민영방송 재허가 요건 강화

- 주식 및 지분 소유의 변경이 고유목적에 비추어 불가피 하였는지 여부 등

- o 최대주주 변경시 방송위 승인 의무화

- o 자유시장경제에서의 자본의 흐름을 과도하게 제한

- ※ 소유주 지분 제한 관련, 당초 논의 되 었던 것과는 달리 현행 30% 유지

「과거사 관련법」이 제·개정되면 이렇게 된다.

올바른 과거사 규명이 불가능한 3가지 이유

- 1) 오도된 역사뒤집기가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왼쪽 눈으로만 근현대사를 보는 시각이 만들어진다.
- 2) 정략적 의도에 악용됩니다. 야당 파괴를 위한 공작 차원에서 진실한 역사규명이 불가능해진다.
- 3) 보복 응징 중심의 과거사 파헤치기가 이루어집니다.
선동적 과거규명, 연좌제식 접근으로 과거규명이 왜곡된다.

■ 헌법질서 파괴와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된다.

- 「친일진상규명법」, 「과거사법」 두 법안이 모두 조사기관에 '동행 명령권'을 부여하고 거부시 형사처벌(친일법)이나 과태료(과거사법)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영장주의에 위배됨
- '친일진상규명법'은 보고서 작성 전에 혐의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헌법상 연좌제 금지 위반

■ 무소불위의 기구가 만들어진다.

-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 의뢰권, 통신자료 요구권, 고발 및 수사의뢰권 등을 부여하여 사실상 사법경찰권을 능가하는 권한을 갖게 됨

- 특별사면 및 복권 건의, 청문회 개최권까지 부여하여 정부의 3부 기능을 모두 갖도록 함

■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악용된다.

- 친일 진상규명과 과거사 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모두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도록 함
(국회 동의 절차는 있으나, 추천절차 없이 모두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음)
- 중립적이고 공평무사한 역사 규명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이념과 시각이 반영된 편파적인 역사 해석의 장이 될 우려가 높후, 여기에 야당 죽이기 등 정치적 목적까지 개입된다면 진실 규명이 아니라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정치투쟁으로 변질될 것임

■ 연좌제로 후손들에 올가미를 씌우게 된다.

- 여당의 당의장 부친이 일본군 현병 오장(伍長)이었고, 야당 대표의 부친이 일본군 중위였다는 것을 문제시하려는 여론이 형성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 발생 조짐

■ 정권의 코드에 맞추어 역사를 왜곡하게 된다.

- 노무현 대통령이 고이즈미 일본 총리를 만났을 때 자신의 재임 중에는 한·일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는데 한·일 과거사를 거론하지 않으려면 친일 문제도 거론하지 말았어야 옳았음.
- 한·일 과거사와 친일문제는 함께 가는 것이지 개별 문제가 아닌데 이런 점에서 친일청산을 강변하는 여당의 주장에 더 의혹이 있는 것임.

■ 일제 당시 국내에 있던 사람을 모두 친일파로 몰게 된다.

- 프랑스의 경우처럼 4년여의 지배가 아니라 사실상 반세기에 걸친 일본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친일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음.
- ‘당시 국내에 있던 사람은 모두 친일파였다’는 주장처럼 단순 논리에 빠질 우려가 있음.

■ 인민재판 식으로 보복·응징하게 된다.

- 가해자 측이 참여하는 것도 문제지만, 피해자 측이 조사의 주체가 되면 감정에 흐르기 쉽고 시민단체가 전문지식과 객관성을 갖췄는지도 의문임.
- 국가기구로 만들 경우 의문사위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도 없음

■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 목적이 아니라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적 술수로 악용된다.

- 현 정권은 시급한 경제 살리기와 민생돌보기는 뒤로 한 채, 노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신호탄으로 하여 여당과 일부 친여시민단체들이 과거사 청산을 최우선 순위의 국정과제인 것처럼 정치쟁점화하고 있음.
- 전 국민을 양분하여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켜 국가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갈 위험이 상존
- 현 정권은 과거청산 작업을 통해 미래의 교훈을 얻기보다는 지난 50여년간 우리 사회를 이끈 주류세력의 교체를 겨냥한 일종의 사회운동 내지 문화혁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엿보임.